

기부금 조정명세서

과세기간	년	월	일부터	상 호	성 명
	년	월	일까지	사업자등록번호	

1. 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등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계산

① 기준소득금액		⑤ 이월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 MIN[④, ②⑥]	
② 「소득세법」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		⑥ 당해연도 지출액 필요경비 산입액 MIN[(④-⑤)>0, ③]	
③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8조·제76조 및 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		⑦ 한도초과액[(③-⑥)>0]	
④ 한도액 [(①-②)>0]		⑧ 소득금액 차감잔액 [(①-②-⑤-⑥)>0]	

2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계산

⑨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		⑫ 소득금액 차감잔액 [(⑧-⑪)>0]	
⑩ 한도액 (⑧×30%)		⑬ 한도초과액[(⑨-⑩)>0]	
⑪ 필요경비 산입액 MIN(⑨, ⑩)			

3. 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계산

⑭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기부금 해당 금액		⑱ 이월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 MIN[⑰, ②⑥]	
⑮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해당 금액		⑲ 당해연도 지출액 필요경비 산입액 MIN[(⑰-⑱)>0, ①⑥]	
⑯ 기부금 해당 금액 (⑭+⑮)		⑳ 한도초과액[(⑯-⑰)>0]	
⑰ 기부금 한도액(㉠또는㉡) ㉠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[⑳×10%+(㉡×20%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금액)] ㉡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(㉡×30%)			

4.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액

㉠ 기부금 합계액(③+⑨+⑰)	㉡ 필요경비 산입 합계 (⑥+⑪+⑲)	㉢ 한도초과액 합계(㉠-㉡)=(⑦+⑬+㉒)

